

1. 개정 이유

해양환경관리업체 기존 기술요원의 이직·퇴사 등 인력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 필수 요건인 기술요원을 확보하여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나,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변경 등록에 필요한 기한을 늘리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변경 등록 기한 연장

- 대표자, 기술요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30일에서 연장하여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

해양수산부령 제 호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(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) ① (생략)	제37조(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<u>30일</u> 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30일(제1항제1호의 대표자 또는 제2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60일)</u>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